

19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9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998년 5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1. 합격예정자 명 단	○ 별첨 ※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
2. 제출서류 접 수	가. 제출서류 접수기간: 1998. 5. 27~5. 30(09:00~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제출서류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 ○ 서울건축사회: (02)582-5715~8 ○ 부산건축사회: (051)633-6677 ○ 대구건축사회: (053)758-8980~5 ○ 인천건축사회: (032)437-3381~4 ○ 광주건축사회: (062)521-0025~9 ○ 대전건축사회: (042)485-2813~7 ○ 울산건축사회: (052)266-5651 ○ 경기건축사회: (0331)47-6129~31 ○ 강원건축사회: (0361)54-2442 ○ 충북건축사회: (0431)223-3084~6 ○ 충남건축사회: (042)256-4088 ○ 전북건축사회: (0652)251-6040~7 ○ 전남건축사회: (062)365-9944 ○ 경북건축사회: (053)744-7800~2 ○ 경남건축사회: (0551)46-4530~3 ○ 제주건축사회: (064)52-3248
3. 제출서류	(1) 응시표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학력증명서 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등이 명시된 것. (4)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 가.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예비시험 시행일의 전일('98. 5. 9)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시도건축사회 회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등의 경력: 해당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해당 경력증명서
5.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1998년 6월 25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함. 나. 합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접수처에서 개별 교부함.
6. 주의사항	○ 응시자의 절거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신분증 지참. ○ 시험 성적열람은 '98. 5. 21~5. 27까지 본 협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단, 우편문의는 열람기간내의 우편 소인분에 한함)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실(581-5711~4)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504-9139)로 문의 바랍니다.

'98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00016	00025	00026	00028	00033	00042	00046	00054	00061	00063	00065	00074	00076	00081	00085	00089
00099	00100	00104	00115	00122	00127	00128	00144	00156	00158	00165	00181	00182	00183	00184	00186
00194	00210	00219	00223	00224	00226	00227	00251	00255	00259	00266	00278	00285	00286	00305	00309
00312	00322	00324	00332	00340	00348	00350	00385	00387	00371	00374	00381	00388	00404	00439	00446
00450	00451	00454	00470	00479	00484	00497	00503	00505	00523	00525	00551	00557	00561	00564	00565
00571	00573	00580	00581	00583	00584	00600	00604	00608	00609	00610	00620	00626	00631	00632	00637
00640	00641	00643	00644	00647	00655	00661	00666	00687	00689	00700	00715	00753	00761	00767	00790
00791	00797	00802	00805	00810	00819	00822	00823	00830	00832	00843	00846	00863	00864	00868	00879
00882	00891	00894	00895	00897	00905	00906	00914	00937	00948	00949	00958	00969	00979	00988	00990
01001	01008	01035	01039	01048	01054	01069	01082	01095	01097	01100	01103	01104	01116	01120	01121
01140	01144	01151	01152	01164	01175	01186	01196	01205	01210	01219	01228	01235	01236	01237	01250
01252	01272	01285	01291	01292	01307	01309	01311	01313	01320	01323	01337	01339	01341	01342	01346
01349	01352	01355	01362	01372	01376	01384	01388	01410	01428	01436	01444	01461	01471	01473	01480
01482	01484	01485	01515	01522	01524	01526	01536	01557	01569	01575	01578	01584	01594	01604	01614
01616	01618	01622	01624	01630	01631	01637	01648	01654	01656	01660	01662	01663	01664	01670	01672
01674	01677	01681	01686	01691	01696	01697	01700	01705	01710	01713	01717	01740	01745	01752	01757
01761	01766	01778	01781	01795	01812	01813	01814	01819	01829	01830	01841	01842	01862	01865	01872
01874	01881	01886	01893	01896	01901	01909	01912	01913	01919	01920	01932	01942	01945	01969	01970
01978	01984	01989	01995	02000	02001	02006	02007	02020	02025	02034	02035	02041	02053	02088	02106
02107	02110	02131	02133	02135	02136	02138	02150	02157	02171	02178	02189	02193	02197	02204	02212
02218	02225	02229	02230	02233	02237	02250	02259	02271	02277	02281	02288	02289	02293	02309	02311
02313	02322	02324	02334	02355	02361	02370	02371	02374	02378	02388	02396	02404	02417	02422	02429
02431	02432	02435	02456	02459	02464	02467	02469	02500	02509	02511	02514	02532	02538	02541	02543
02565	02569	02574	02580	02582	02583	02597	02613	02620	02624	02628	02632	02639	02655	02660	02663
02665	02666	02668	02678	02683	02687	02690	02693	02703	02707	02708	02717	02719	02726	02730	02731
02733	02742	02744	02778	02780	02787	02788	02792	02806	02809	02814	02817	02824	02841	02844	02848
02853	02854	02855	02863	02864	02872	02875	02879	02882	02893	02905	02910	02914	02916	02933	02941
02954	02959	02963	02974	02975	02977	02979	02980	02990	03013	03018	03019	03028	03034	03047	03048
03053	03059	03066	03068	03080	03082	03087	03091	03107	03111	03116	03120	03132	03140	03145	03163
03186	03193	03203	03210	03215	03218	03219	03224	03233	03250	03251	03253	03263	03265	03266	03287
03296	03298	03305	03307	03308	03312	03321	03323	03332	03341	03342	03351	03369	03373	03393	03394
03398	03403	03415	03418	03431	03433	03435	03444	03461	03473	03483	03485	03506	03510	03532	03543
03546	03547	03557	03562	03563	03578	03580	03596	03597	03598	03607	03608	03610	03613	03614	03621
03623	03632	03636	03640	03645	03661	03668	03675	03677	03687	03688	03700	03707	03710	03712	03714
03723	03735	03742	03761	03798	03801	03804	03807	03808	03825	03830	03839	03841	03843	03854	03865
03866	03878	03904	03923	03925	03936	03938	03940	03943	03944	03946	03954	03960	03960	03963	03969
03975	03977	03996	03998	04000	04021	04024	04050	04056	04059	04063	04072	04073	04076	04081	04082
04088	04090	04092	04096	04098	04099	04103	04110	04159	04163	04173	04193	04194	04197	04198	04204
04212	04218	04233	04244	04247	04250	04251	04263	04292	04301	04306	04330	04340	04348	04349	04353
04357	04365	04369	04375	04380	04381	04395	04396	04400	04413	04419	04425	04439	04449	04454	04470
04473	04475	04482	04485	04487	04492	04499	04500	04519	04520	04522	04526	04527	04540	04541	04542
04556	04581	04584	04589	04600	04614	04622	04624	04632	04664	04666	04673	04679	04688	04716	04723
04730	04742	04755	04756	04775	04789	04790	04797	04798	04802	04812	04814	04817	04826	04828	04831
04834	04836	04839	04843	04846	04854	04870	04894	04910	04913	04939	04959	04960	04963	04969	04989
04993	05000	05014	05020	05022	05024	05029	05039	05042	05045	05046	05050	05062	05093	05106	05111
05112	05113	05115	05123	05136	05143	05155	05157	05164	05167	05168	05170	05172	05174	05178	05181
05186	05203	05208	05220	05228	05235	05238	05245	05248	05254	05260	05262	05266	05274	05283	05293
05302	05306	05307	05331	05341	05370	05376	05379	05387	05391	05392	05400	05405	05407	05414	05417
05422	05426	05429	05433	05441	05449	05466	05479	05481	05482	05483	05490	05494	05496	05498	05506
05544	05550	05559	05560	05583	05588	05591	05602	05603	05605	05608	05612	05628	05638	05639	05653
05658	05660	05667	05678	05697	05702	05712	05714	05723	05732	05738	05745	05759	05772	05793	05795
05804	05811	05812	05816	05818	05819	05830	05831	05845	05852	05854	05862	05869	05870	05872	05878
05881	05888	05896	05899	05902	05904	05909	05914	05930	05939	05951	05952	05957	05967	05968	05991
05993	06005	06010	06025	06026	06030	06039	06044	06047	06050	06063	06071	06084	06095	06129	06144
06150	06155	06157	06165	06171	06173	06178	06202	06206	06208	06210	06211	06216	06235	06238	06243
06245	06249	06252	06258	06265	06269	06274	06286	06294	06313	06319	06354	06356	06368	06375	06379
06387	06394	06410	06411	06413	06422	06425	06426	06428	06432	06433	06434	06438	06441	06470	06473
06483	06484	06500	06502	06503	06517	06519	06521	06524	06525	06536	06555	06560	06574	06576	06585
06608	06610	06611	06612	06613	06614	06616	06620	06629	06641	06642	06652	06670	06673	06674	06678
06680	06689	06690	06694	06695	06696	06709	06715	06719	06724	06727	06728	06735	06736	06742	06744
06750	06756	06764	06773	06775	06776	06787	06788	06792	06798	06803	06805	06811	06822	06827	06834
06836	06847	06849	06858	06865	06870	06872	06876	06880	06903	06904	06911	06923	06926	06928	06930
06932	06938	06941	06943	06954	06968	06969	06971	06974	06979	06988	06989	07015	07025	07034	07043
07048	07050	07057	07062	07080	07083	07090	07095	07108	07143	07144	07147	07153	07159	07163	07168
07186	07188	07194	07196	07198	07208	07214	07224	07226	07230	07236	07241	07249	07255	07259	07260
07262	07264	07265	07269	07279	07284	07289	07296	07299	07300	07306	07316	07318	07321	07322	07338
07341	07342	07369	07371	07372	07385	07388	07394	07405	07406	07419	07424	07433	07434	07437	07438
07439	07455	07470	07474	07479	07481	07485	07489	07494	07497	07507	07517	07522	07527	07529	07538
07550	07557	07565	07568	07574	07578	07596	07598	07614	07616	07625	07642	07643	07644	07645	07659
07660	07662	07670	07680	07696	07714	07738	07742	07748	07754	07770	07778	07784	07803	07806	07807
07820	07829	07834	07842	07843	07846	07848	07849	07853	07857	07860	07870	07875	07889	07893	07918
07919	07927	07930	07934	07946	07951	07955	07960	07964	07971	07973	07984	07985	08004	08030	08031
08036	08040	08057	08065	08067	08069	08070	08076	08077	08080	08082	08095	08103	08104	08106	08119
08129	08133	08168	08174	08179	08205	08216	08217	08224	08237	08251	08275	08282	08291	08298	08317
08321	08324	08330	08342	08347	08362	08365	0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근거규정: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제2항)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이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처음 도입당시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건설기술자에 한하였으나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학·경력계 건설기술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교육훈련은 건설관련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보급과 건설인으로서 사명감을 교육훈련을 통하여 함양하는 데 있다.

2. 교육훈련 대상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다음 사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

업한 "경력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된 후 교육대상자에 해당이 되며 그 이전에는 교육대상이 아님.

3.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

가) 종합교육기관: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 환경, 교통 기타중에서 토목과 건축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분야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다.

(2일, 1주, 2주 교육과정을 교육함)

나) 전문교육기관: 토목, 건축, 기계 등에서 1개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며, 건축에서도 세분하여 특정분야만을 교육시키는 기관(1주 교육과정만을 교육함)

4. 교육주기와 교육기간

가) 교육주기

- 1998년 1월 1일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으면 됨.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과정을 이수한 건설기술자는 교육훈련 이수일로부터 5년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감리(원)과정을 이수한 건설기술자는 교육훈련 이수일로부터 3년내에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다) 최초교육자 교육기산일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날
 - 기술계기술자: 취업일자로부터
 - 학·경력자: 협회·신고접수 처리일

5. 건설기술자교육과 감리원 교육과의 관계

가) 금년('98.1.1)부터는 건설기술자와 감리원교육을 상호 구분하지 않으므로 감리원 과정이나 기술자과정과 관계없이 모두 수강할 수 있음

나) 감리원의 경우 이미 건설기술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며, 건설기술자가 감리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술자로서 받은 기존의 교육은 계속 유효하므로 별도의 감리원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음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교육은 상호 대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은 개정·삭제할 예정임

6.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보수교육과의 관계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은 각기 별도로 받아야 하나, 현재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이수기관
□ 최초교육자 • 자격취득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로 교육훈련을 받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여기에서의 최초교육훈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2주 이상	종합교육기관
□ 재교육자 • 기술사(감리원인 건축사 포함) •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건기법령에 의거 인정받은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이라도 최초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은 2주이며,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 인정시점은 특급으로 신고·접수 처리된 날 또는 기타 등급으로 신고한 후 소정기한의 경력을 추가하여 특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말함.	14시간 이상	종합 또는 전문교육기관
□ 재교육자 •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1주 이상	종합 또는 전문교육기관

교육원, 농 어촌진흥공사, 시설안전 기술공단 3개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보수 교육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나) 현재 보수교육의무를 타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갈음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신규로 지정된 나머지 전 교육기관도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기술자격 법시행령 개정 공포 예정중 이므로 희망교육기관에 문의 바람)

7. 임의신고자(경력자)의 건설기술자 교육
가) 기술계 자격이 없거나 건설관련학과를 나오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설계, 시공, 감리 등의 건설실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자(임의신고자)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경력인정지침』에 의하면 기술인협회의 인정계획공고에 따라 경력기술자 인정 신청을 받아 경력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고사에 합격한 후 2주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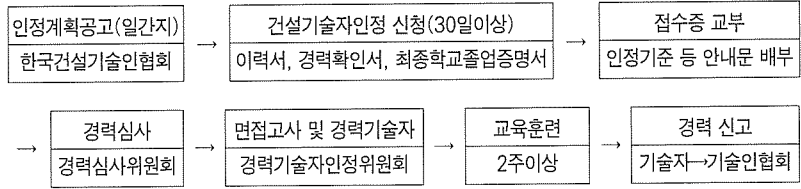
나) 경력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경력기술자인정지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된 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는 교육훈련대상이 아니므로 경력자 인정신청 후 면접고사를 합격하면 기술인협회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경력기술자로 인정됨.

- 경력기술자 인정절차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인정계획공고에 따라 경력기술자 인정신청 및 경력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경력기술자 인정위원회의 면접고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 면접고사에서 경력기술자로 인정된 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2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
-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기 이전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경력기술자로 인정 받은 후 또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중납비 때문에, 반드시 인정절차에 따라 면접고사 합격 후 교육이수해야 함.

※ 참고: 기술인협회(기술부 02-567-5603)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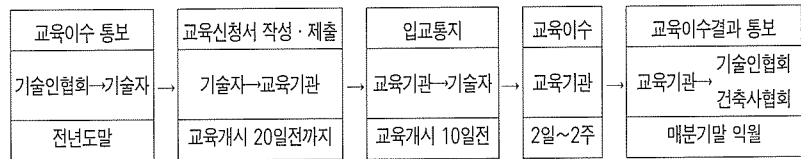
■ 인정절차



■ 경력인정 최소기준

기술 등급	기술 수준	최소 경력
중급기술자	기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 사: 9년 이상 • 전문대졸: 12년 이상 • 고 졸: 15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졸: 5년 이상 • 고졸이상: 7년 이상 • 고졸미만: 10년 이상

8. 교육훈련 신청절차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도 기술인협회에서 교육훈련통보를 합니다.

9. 교육미이수시 벌칙

- 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업무정지(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동법제43조제1항 및 동시행 규칙제4조의4)
- 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51조의2제6항)
- 다)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 동법제43조제1항)

10. 본 협회 건축교육원의 '98년도 교육 유보

본 협회는 건교부의 교육취지에 부합한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으나, 작년 말부터 예기치 못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건축사사무소의 구조조정과 소속 건설기술자들의 퇴사·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본 협회의 교육생(2차대상자; 전문교육과정)확보가 어려워져서 '98년도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을 유보하고, '99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코자 건설교통부에 교육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 건축교육원에서 교육수강을 할려고 계획한 건설기술자는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교육훈련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교육인원/년	전화
	□ 종합교육기관(5)				
1	건설기술교육원	인천시 남동구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		032)463-4900-2
2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서대문구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		02)394-7200
3	충청건설교육협의회			3,500	02)3449-8814
	-건설공제조합	충북 충주시	토목·건축·안전·환경	1,000	0441)850-4500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 음성군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2,500	0446)879-2330
4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시 서구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4,650	062)374-5000
5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남 양산시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5,000	0523)83-0333
	□ 전문 교육기관(21)				
6	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 안양시	안전진단		0343)80-3171
7	농어촌진흥공사	경기 의왕시	농어업 토목		0343)20-3271
8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관리 및 건축구조설계 실무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기계·전기) 지반재해 예방기술	2,000	02)3416-3765
9	한국토지공사	경기 성남시	연약지반개량, 매립 및 준설 택지개발실무, 도시계획 및 조경실무	1,000	0342)866-8552
10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전력시공관리(토목·건축·기계)	620	02)3456-5558
11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서초구	건축설계·건축관련법규		02)581-5711
12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시 강남구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1,150	02)569-6029
13	대한측량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측량	300	02)671-2939
14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울시 동작구	열사용 기자재 시공	700	02)8476-114
15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서울시 동작구	공기조화 및 위생설비	500	02)583-3673
16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서울시 강남구	건설기자재 관리	200	02)3458-5826
17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 부천시	건설기술자 안전관리	250	032)667-4191
18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서울시 중구	건설사업관리	800	02)773-5901~3
19	한국도로교통협회	서울시 강남구	도로공학·교통공학	800	02)562-5871~3
20	대한토목학회	서울시 송파구	지반기초 및 터널, 구조 및 콘크리트	400	02)407-4115
21	한국콘크리트학회	서울시 강남구	콘크리트 기술	1,000	02)568-5985
22	한국건설경영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건설사업관리·건설디자인	1,000	02)568-0143
23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서울시 송파구	건설방식	1,000	02)3401-8388
24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건설품질관리	200	02)501-5561
25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건축 및 토목품질시험 실무	1,000	02)830-8234-6
26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서울시서초구	적산	450	02)588-2162

〈별첨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건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수기한 및 교육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998.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교육 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 기간	교육 기관
기술자격취득자 ○ 교육이수자 - '92.12월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93.1.1~ '93.2.28 교육을 이수한자 - '93.3.1~ '97.12.31 교육을 이수한 자 - '98. 1. 1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미이수자 - '94.12.31 이전에 취업한 자 - '95.1.1 ~ '95. 2월말 취업 한 자 - '95. 3.1 이후에 취업 한 자	- '98. 6.30 - '98. 3.31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5년을 가산한날까지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기술사: 2일 -기타: 1주 -2주	종합·전문 종합
감리원(학력·경력 감리원 포함) ○ 교육이수자 - '94.12월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93.1.1~ '93.2.28 교육을 이수한자 - '98. 3. 1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미이수자 - '94.12.31 이전에 취업한 자 - '95.1.1 ~ '95. 2.28 취업 한 자 - '95. 3.1 이후에 취업 한 자	- '98. 6.30 - '98. 3.31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 '98. 6.30 - '98. 3.3 -취업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현장 배치일 이전	-기술사·건축사: 2일 -기타: 1주 -2주 -2주	종합·전문 종합 종합
학력·경력자(감리원 제외) ○ 교육이수자 - '97.12월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98.1.1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자 ○ 교육 미이수자 - '96.2월말 이전에 학력·경력 기술자로 신고한 자 - '96. 3. 1~ '96. 5.31 학력·경력 기술자로 신고한 자 - '96. 6. 1 이후에 학력·경력자로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5년을 가산한날까지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 '98. 6. 30까지 - '98년말까지 -신고·접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 신고한 자 날까지	-특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후 10년 이상 경력자: 2일 -기타 : 1주 -2주	종합 또는전문 종합

정정합니다.

본지 98년 5월호(통권 제349호) 신입회원, 현상설계경기, 건축계소식 기사내용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 신입회원 명단 중(128쪽) 김동욱회원의 사무소명이 「건축사사무소 하늘」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이를 「건축사사무소 하늘」로
- 현상설계경기 기사중(120쪽) 영덕공업고등학교의 우수작 대표자 김정숙을 김경숙으로
- 건축계소식 도로종합기술연구원 현상설계당선작 발표 기사중(113쪽) 도로연구소군 우수작 사무소명이 이오영임을 2.5명인으로